

보도자료

2012년 12월 24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기획관 편성평가정책과 과진희 과장(☎750-2350)
편성평가정책과 임기수 사무관(☎750-2373 kisoolim@kcc.go.kr)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올해부터 해마다 실시, 제작지원 연계 -

올해부터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등록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제작지원사업 심사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등록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실효성과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산업의 콘텐츠 제작역량 제고에 관한 산업적, 정책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등록대상인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기획서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평가는 방송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디지털TV 방송시대 본격 개막 !

그리고,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제작, 국내외 유통, 국내외 시장 수익성, 심의규정 준수여부, 수상실적 등 14개 항목 19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년도 이전 연도인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평가결과는 기존 제작지원사업의 ‘제작실적 및 제작·유통 능력’의 10점으로 반영하게 되며, 허가·승인 사업자의 경우,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3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진흥정책 방안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해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해마다 시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비교평가 방식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제작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자사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타 사업자와 비교 함으로써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붙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요

[붙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요

□ 도입 배경

- o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산업의 콘텐츠 제작역량 제고에 관한 산업적, 정책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음
- o 제작역량평가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대

□ 경과 사항

- o 연구과제 수행: '11.8월 ~ '12.12월(KISDI)
- o 사업자 의견수렴: 7.17.~19., 10.16., 11.21.
- o 공개 토론회 개최: 10.25.

□ 평가 대상 사업자

- o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등록 대상 방송사업자(총 192개)
 - 라디오와 데이터 방송콘텐츠 및 주문형 방송콘텐츠 사업은 텔레비전 방송 콘텐츠와는 경쟁력 요소가 상이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법적근거: 방송법 제31조

□ 평가항목

- o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해 평가

구성요인	세부 구성요인	평가항목(14개)
자원 경쟁력	인적자원 경쟁력	①콘텐츠 인력 전문성, ②콘텐츠 인력 개발, ③콘텐츠 인력 보상
	물적자원 경쟁력	④자기자본, ⑤제작비, ⑥콘텐츠 지적재산권 평가
프로세스 경쟁력	제작 경쟁력	⑦신규 콘텐츠 제작, ⑧신기술 콘텐츠 제작
	유통 경쟁력	⑨국내시장 유통 역량, ⑩해외시장 유통 역량
성과 경쟁력	경제적 성과 경쟁력	⑪국내 시장 수익성, ⑫해외 시장 수익성
	사회적 성과 경쟁력	⑬콘텐츠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 ⑭콘텐츠 수상실적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총 1,000점)

- o 중요도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 경쟁력'에 가장 높은 400점, 잠재적 역량을 평가할 있는 '자원 경쟁력'에 350점,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은 '프로세스 경쟁력'에 250점 부여

□ 평가결과의 활용

[1]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진흥 정책방안 개발에 활용

- 매년 축적되는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기초자료를 축적함

[2] 정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시 근거 자료로 활용

※ 허가승인 사업자의 경우, 방송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제작지원제도 심사시 반영

[3]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4] 방송대상에 "콘텐츠 제작역량" 부문을 마련하여 콘텐츠 제작역량 우수 사업자에 대한 시상을 정례화

- 규모대비 제작역량을 비교분석하여 중소콘텐츠 제작업체 육성에 기여

□ 기대 효과

- o 사업자 비교평가 방식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제작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o 방송사업자는 자사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수준을 타 사업자와 비교 함으로써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

□ 결과 공개

- o 익년 3월초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군으로 등급 공개

□ 평가 실시

- o (실시 주기) 매년 실시
- o (평가대상 기간) 해당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자료를 대상으로 평가
- o (수행기관) 방송평가제와 같이 외부의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평가 지원단이 되어 평가수행

□ 향후 일정

- o 평가실시: '12.12.~'13.2월
- o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및 공개: '13.3월

붙임 1.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
2.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방안

<붙임 1>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

구성 요인	세부 요인	세부 평가 항목(14개)	세부 평가 지표(19개)	배점
자원 경쟁력 (350)	인적 자원 (100)	인력 전문성(50)	콘텐츠 전문인력 비중	50
		인력 계발(25)	콘텐츠 직무관련 교육비	25
		인력 보상(25)	콘텐츠 인력 인건비	25
	물적 자원 (250)	자기자본(50)	자기자본 비중	50
		제작비(150)	제작비 규모	75
			제작비 비중	75
		콘텐츠 저작재산권(50)	콘텐츠 저작재산권 보유	50
프로 세스 경쟁력 (250)	제작 (200)	신규 콘텐츠 제작(170)	자체제작 콘텐츠	100
			공동/외주제작 콘텐츠	50
			구매후 제작 콘텐츠	20
		신기술 콘텐츠 제작(30)	신기술 콘텐츠	30
	유통 (50)	국내시장 유통 역량(30)	국내시장 판매량	30
		해외시장 유통 역량(20)	해외 견본시 진출	10
			해외시장 판매량	10
성과 경쟁력 (400)	경제적 성과 (300)	국내시장 방송사업 수익(200)	방송사업수익 규모	100
			콘텐츠 인력 1인당 방송사업수익 규모	100
		해외시장 방송사업 수익(100)	방송사업수익 규모	50
			콘텐츠인력 1인당 방송사업수익 규모	50
	사회적 성과 (100)	콘텐츠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50)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50
		콘텐츠 수상실적(50)	콘텐츠 수상실적	50
총계				1,000